

회계의 주차관리계정 세입·세출 규정 중 첫째, 현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액 시 세입 조치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경우 제반업무(대상주차장 선정·공고·입찰·계약·사후관리 등)를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수입금을 현행 시 세입에서 제외하여 구 세입으로 조정하고

둘째, 서울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수입 등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시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제외하여 자치구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자치구간 관할사무와 비용 귀속을 일치시킴으로서,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準向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駐車違反車輛牽引等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현재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시켜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정차위반 견인을 각 구청장이 함.
- 견인료 수입을 현행 서울특별시 수입에서 견인주체인 각 자치구로 이관시킴.
- 민간견인업체 견인업무 대행비용을 현재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지급토록 함.

4. 검토요지

○현행 서울시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35대를 구입, 10대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시켜 독자적으로 견인업무를 하고 나머지 25대는 각 자치구로 차량과 인원을 파견시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한편, 민간견인업체는 사업등록을 한후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견인에 따른 민간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 업무 역시 각 자치구로 이관시키고자 함.

○현행제도는 단속권 즉, 딱지를 떼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견인업무는 시에서 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단속과 견인업무를 묶어 구청장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목적임.

○문제는 현재 견인업무를 위해 각 자치구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인데 업무가 이관될 경우 자연스럽게 파견된 인력이 자치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에따라 자치구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자치구로서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과 상충되는 정원 늘리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며 그렇다고 현재있는 인원을 줄이기 또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가 정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두번째,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를 각 자치구